

명칭 자율주행 분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평가 시나리오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

(주)아이브이에이치

1. 규제특례 내용

- 주행구간 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자율주행 AI모델의 학습 및 평가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규제특례 구역

-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17길 19 2층, 3층 아이브이에이치
-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
-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한국도로교통공단
-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9층 차세대융합기술원
-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

기간

- 2년

규모

- 1000건 합성데이터 생성 및 실증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(1) 안전성 검증지표 추가, 수정 또는 내용 구체화를 통해 현 검증 지표의 충분성에 대한 근거 마련

(2) 2차 실증* 전 「합성데이터 생성·활용 안내서」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평가 수행 및 개인정보위에서 중간 점검 *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수요기업에 공유

(3)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유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것

공통조건

-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-공통사항

-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-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

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: 건당 5억, 총보상한도 5억
- 위기관리컨설팅비용 : 건당 5억, 총보상한도 5억
- 위기관리실행비용 : 건당 5억, 총보상한도 5억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없음